

제 267 회 거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총무위원회(2022.12.6.)

2022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

총 무 위 원 회
[전문위원 노 민 섭]

<의안번호 제2022 - 116호>

2022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2. 11. 21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22. 11. 29.

2. 제안사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·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.

3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59조: 재산과 기금의 설치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: 기금운용계획의 변경
 - ↳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 초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.
-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4.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▣ 변경(안)

○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

- 연도말 기금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구분	'21년도말 조성액(a)	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			'22년도말 조성액 e=(d)+ (a)
		수입 (b)	지출 (c)	증감 (d)=(b)-(c)	
계	135,585,615	39,177,452	40,000,000	△822,548	134,763,067
재정안정화계정	123,216,204	39,048,906	40,000,000	△951,094	122,265,110
통합계정	12,369,411	128,546	0	128,546	12,497,957

- 자금운용계획

(단위 : 천원)

수입계획				지출계획			
항목	변경 수입액	당초 수입액	증감	항목	변경 지출액	당초 지출액	증감
계	174,763,067	166,457,675	8,305,392	계	174,763,067	166,457,675	8,305,392
전입금	38,000,000	30,000,000	8,000,000	예치금	134,763,067	126,457,675	8,305,392
예치금 회수	135,585,615	135,585,615	-	기타지출	40,000,000	40,000,000	
이자수입	1,177,452	872,060	305,392				

-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치(탁)처	예치금 및 예탁금				비고
		'20년도말 현재액	'21년도말 현재액(a)	'22년도말 현재액(b)	증감 (b)-(a)	
예치금	농협	152,278,879	135,585,615	134,763,067	△822,548	

5. 검토의견

▣ 통합재정안정화기금 <기획예산담당관> p.23

- 이 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 및 「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2020년에 설치하였음.
- 이 기금의 목적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함임.
- 변경안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여유재원 전입금 380억원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고, '21년 기금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금액 1,355억 8,561만 5천원과 이자수입 11억 7,745만 2천원을 반영하여 1,347억 6,306만 7천원을 예치하고 기타지출에 400억원을 편성하고자 함.
-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참고자료

● 관련법령 발췌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(기획예산담당관) [시행 2020. 9. 29.]

제4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(이하 “재정안정화 계정”이라 한다)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.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해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일반회계 세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입액의 합이 최근 3년간 해당 세입의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. 다만, 가목의 경우 “합”을 “증가율”로 “평균금액의 110퍼센트”를 “평균 증가율의 10퍼센트”로 본다.

- 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: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- 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의3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: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- 다. 「지방교부세법」 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세: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- 2.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- 3.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(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) [시행 2021.12.29.]

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- 1. 아립예술제 행사
- 2. 그 밖의 아립예술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